

제420회 임시회

' 24. 9. 4.(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박지현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4년 8월 23일
- 회부일자 : 2024년 8월 26일

3. 제안이유

-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의 이용료 감면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 인용된 법령의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변경하며, 조례에 사용된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된 용어 중 “사용료”를 “대관료” 와 “이용료”로 구분해 명시함.
(안 제4조)
- 교육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활동 보조를 위한 동반 보호자의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의2)
 - 이용감면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의사상자(유족), 국군포로가족 등
- 이용료 및 감면 내용에 관한 [별표2]를 신설함.
 - 이용료 책정 기준: 시중요금의 50% 이하
 - 감면 내용: 평생교육프로그램 1인당 연2과목 감면

5. 검토의견

가. 제출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이하 “도노인복지관”이라 함)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그 밖에 조례의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기 위한 것임.
- 충청북도에서 위탁 운영 중인 도노인복지관의 평생교육프로그램(행복 실버대학)을 이용 중인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의 이용료 감면 요청이 있었고, 이에 도 담당부서 및 도노인복지관과 협의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바,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일부 용어 및 문구의 정비 필요성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것으로 판단됨.
 - ※ 현재 도 내 청주시와 충주시에서 지역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음.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4조 및 제5조는, “사용(료)” 를 “대관(료)” 로 변경한 것임.
 - 이는 노인종합복지관 내 시설(강당, 교육실 및 회의실)즉 공간의 대여에 대한 규정인 만큼,
 - 사전적 정의 상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씬’을 뜻하는 “사용” 보다는 ‘어떤 공간을 빌리거나 빌려줌’을 뜻하는 “대관”이 용어의 적합성 및 도민 이해의 편의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 그리고 안 제5조는, 시설의 대관료 지불을 면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거나 노인복지 관련 기관·단체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대관할 경우 대관료를 면제하고 있음.

- 또한 60세 이상의 수급자 어르신이 개인적 용도로 시설을 대관한 사례는 없고, 공공 시설을 개인적 용도로 대관한다는 것은 도노인종합복지관의 설립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바, 수급자 어르신에 대한 감면은 대관이 아닌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따라서 “감면”을 “면제”로 바꾸고 제1호를 삭제하는 것은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됨.

현행	개정안
<p>제5조(사용료의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u>사용료를 감면</u>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60세 이상의 노인</u>으로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에 따른 수급자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경우 3. 노인복지 관련 기관·단체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할 경우 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p>제5조(대관료의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u>대관료를 면제</u>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 제>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경우 3. 노인복지 관련 기관·단체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할 경우 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안 제5조의2는, 도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 중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 제1항은 감면 대상을 현행 수급자와 차상위 어르신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유족), 국군포로가족 등까지 확대하였음.
 - 이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제3항은 혼자서 거동 등 활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해 참여할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이 함께 교육장소에 출입해 프로그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타당함.

- 안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법령 및 조례명과 조는 띄어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 붙여 쓴 것을 바로잡은 것임.

현 행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V제21조의2제3항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V제11조

- 안 제6조제4항 및 제13조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한 것임.
 - 안 제6조제4항의 경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제1항에 ‘위탁사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항은 불필요함.
 - 안 제13조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29조에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규칙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조는 불필요함.
- 시설 대관료 감면에 대해서만 규정했던 현행 ‘[별표] 사용료 기준표’를,
 - 시설 대관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별표 1] 대관료 기준표’ 와
 -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별표 2] 이용료 및 감면 내용’ 으로 이원화 하였음.
 - 이는 도노인종합복지관의 대관료 및 이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운영 및 관리에 있어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현행				개정안			
[별표] 사용료 기준표 (제4조제3항 관련)				[별표 1] 대관료 기준표 (제4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	평일 사용료 (이용료)	비고	구분	기준	평일 대관료	비고
강당	주간 1회 2시간	30,000원	· 토. 일. 공휴일 및 냉·난방 시는 평일 요금 의 20% 가산 · 야간(18시 이후)은 주간사용료 의 20% 가산	강당	주간 1회 2시간	30,000원	· 토. 일. 공휴일 및 냉·난방 시는 평일 대관료 의 20% 가산 · 야간(18시 이후)은 주간대관료 의 20% 가산
교육실 회의실		20,000원	· 매시간 초과 시마다 20% 가산	교육실 회의실		20,000원	· 매시간 초과 시마다 20% 가산
				[별표 2] 이용료 및 감면 내용(제4조제3항, 제5조의2 관련)			
구분	기준	이용 료	비고				
평생 교육 프로 그램	1인/ 1과목	시중 요금 의 50% 이하	1. 시중요금은 당해 연도 1월 기준, 3개소 이상 업소 요금의 산술평균을 말함. 2. 감면내용 · 제5조의2제1호 대상: 100분의 100 · 제5조의2제2호~제9호 대상: 100분의 50 단,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감면은 연간 1인당 2과목에 한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노인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그 밖에 조례의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개정 취지 및 내용상 타당함.
- 또한 도담당부서 및 유관기관인 도노인복지관과의 협의를 진행했고, 민의 수렴을 위한 조례안예고 등을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